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항중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5.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5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9. 8. 31)되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장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연서주민의 수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규정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20세 이상 주민 1/50의 범위내 인원이 연서로 상급기관장에게 청구)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를 500인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대완)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내 연서로 상급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토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에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타 자치구와의 비교검토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세 이상 500인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제2조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은 편이며, 적은 수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시에는 감사청구 다발로 인한 부작용과 비능률성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500인”을 “1,000인”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2호
----------	------------

제안년월일 : 2000. 5. 23.

제출자 : 유남열위원외1인

1. 수정이유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적을 경우 주민감사청구 다발로 인한 부작용과 비능률성이 우려되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500인”을 “1,000인”으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

제정 (안)	수정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500인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1,000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의 “500인”을 “1,000인”으로 수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2000. 5.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9. 8. 31)되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장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연서주민의 수를 같은 법에서 지방자
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규정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조
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20세 이상 주민 1/50의 범위내 인원이 연서로 상급기관장에게
청구)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500인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라.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500인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